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00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연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을 926,687,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6,687,3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대리점 계약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1,521,131,7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131,77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B는 통신기계 도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사이의 대리점계약에 근거하여 고객들과 C 이동통신가입계약을 위탁 체결 · 관리하는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영업을 수행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5. 11. 1.부터 위회사와 같은 업종인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

- 1)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2015. 10. 26. 주식회사 B에 2,672,294,458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6. 2. 12.경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574,806,860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부과처분 하였다.
- 2) 2018. 12. 1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의 국세채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법인세	2012년	2016. 2. 3.	2016. 2. 29.	667,693,520	937,158,833

1) 원고는 2015. 11. 26.자 채권 양도 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나 이와 같이 선택한다.

법인세	2013년	2016. 2. 3.	2016. 2. 29.	376,604,130	537,037,170
법인세	2014년	2016. 2. 3.	2016. 2. 29.	624,800,040	890,964,840
부가가치세	2012. 2기	2016. 2. 5.	2016. 2. 29.	274,910,460	392,022,130
부가가치세	2013. 1기	2016. 2. 5.	2016. 2. 29.	98,559,700	140,545,920
부가가치세	2013. 2기	2016. 2. 5.	2016. 2. 29.	186,413,210	265,824,950
부가가치세	2014. 1기	2016. 2. 5.	2016. 2. 29.	159,111,940	226,893,510
부가가치세	2014. 2기	2016. 2. 5.	2016. 2. 29.	186,713,860	266,253,750
합계				2,574,806,860	3,656,701,100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의 지급

1) 주식회사 B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C로부터 주식회사 B가 위탁 체결한 이동통신가입계약의 수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2015. 11. 26.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B가 위탁 체결한 이동통신계약가입자의 수는 31,426명이다.

2) 주식회사 B는 2015. 11. 26. 위 회사가 C와의 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회사 B가 위탁 체결한 이동통신계약가입자 31,426명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에게 2015. 11.부터 2018. 11.까지 별지 '수수료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21,131,778원을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B의 재산 상황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국세채권 외에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합계 594,444,445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 합계 58,489,228원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미 피고가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8. 3. 2.경 위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달리 원고가 위 시점 이전에 위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납세고지나 부과처분의 시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2014년도 위 국세에 대한 과세기간 말일인 2014.12. 31. 무렵에 모두 성립하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채권 2,574,806,860원은 이 사건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세 채권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 2062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B의 채무까지 인수하여 소극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회사의 채무는 물론 유일한 재산까지 인수함으로써 위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이상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은 앞서 본 31,426명의 이동통신가입계약자를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 관리한 용역 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수수료채권은 주식회사 B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수수료는 주식회사 B가 이동통신계약 가입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일 뿐, 위 수수료가 가입유치와 별개의 고객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질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위 회사의 재무상황을 누구보다 잘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한 직후에 체결된 점, ③ 이 사건 국세채권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 이외에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영업 일체를 양도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은 넉넉하게 추인된다(따라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 1)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 역시 주식회사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와 위 회사로부터 인수한 직원들의 퇴직금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C를 비롯한 거래처 및 직원들과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영업권 자체를 주식회사 B에 다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영업권의 가액을 각 한도로 하여 취소하고, 가액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액수를 장래의 현금 수익으로 가정한 다음 여기에서 영업비용과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영업권의 가액을 786,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 데, 영업권의 가액은 통상 특정 영업이 갖는 현재의 재무상황 및 영업시설과 그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기대수익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감정인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만을 장래의 수익으로 한정하고 위 대리점 영업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다른 수익은 배제한 채 위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의 견은 위 대리점 영업권의 가액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이후 위 대리점과 관련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위 대리점 영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실질 가치에 관하여 보면, 주식회사 B는 C에 대하여 594,444,445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는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수료 채권과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액은 위 수수료 채권의 실질 가치 산정에 있어 공제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④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치는 적어도 위 수수료 채권의 실질 가치인 926,687,333원(= 1,521,131,778원 - 594,444,445원)에 달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의 가액은 926,687,33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926,687,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26,687,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구천수, 판사 이진규